
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8525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4.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상정경과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심사경과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	제1765호	정일영의원	2024. 7. 15.	○ 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교육위원회(2024. 8. 26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	제7514호	김문수의원	2025. 1. 15.	○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위원회(2025. 2. 1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
나.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 3. 17.)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 3. 23.)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의 법률안을 수정하여 의결함.

다.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교육위원회(2026. 3. 24.)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1개의 법률안으

로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6조, 제29조 및 제30조).

또한,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(補修)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,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).
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학교의 장”을 “학교의 장과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(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“외국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”으로 한다.

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)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, 제20조에 따른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, 제21조에 따른 시·군·구평생학습관, 유치원, 학교,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(이하 이 조에서 “평생교육기관등”이라 한다)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(補修)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

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·기간·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각급학교의 장”을 “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(이하 “각급학교등”이라 한다)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각급학교의”를 “각급학교등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각급학교의”를 “각급학교등의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“각급학교의”를 각각 “각급학교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학의 장”을 “대학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)의 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각급학교의”를 “각급학교등의”로 한다.

제4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”로 한다.

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) ① (생략)</p> <p>②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<u>학교의 장</u>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6조(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학교의 장과</u> <u>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(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“외국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7조의2(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)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, 제20조에 따른 시·도</u></p>

평생교육진흥원, 제21조에 따른 시·군·구평생학습관, 유치원, 학교,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(이하 이 조에서 “평생교육기관등”이라 한다)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(補修)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·기간·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(학교의 평생교육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

제29조(학교의 평생교육) ① -----

-----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(이하 “각급학교등”이라 한다)의 장-----

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·시행하도록 하며,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·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·도서관·체육관,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30조(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)

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·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평생교육시설을

② 각급학교등의-----

③ -----
-----각급학
-----교등의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)

① 각급학교등의-----

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
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
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
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
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
영할 수 있다.

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
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
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
야 한다.

제4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관할청이 부과·징수한다.

각급학교등의

② 대학(「고등교육법」에 따
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
등교육기관을 말한다)의 장

③ 각급학교등의

제4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
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
료를 부과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